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제1호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폐기물 관리시설 제외)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대 방역시설)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그 외 시설)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제1호
마목 중 2) 적용

*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하였을 때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90 지급

□ (대상 지역) 경기북부와 강원 25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

① (제외대상, 25개 시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주, 고양, 동두천, 남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홍천, 평창, 춘천, 횡성, 정선, 강릉, 삼척, 영월

② (인접지역 16개 시군) 양평, 여주, 원주, 태백, 제천, 단양, 충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봉화, 영주, 문경, 예천, 울진

② (그 외 지역) 제외대상(25개 시군)과 인접지역(16개 시군) 외 모든 시군

□ 인정 요건 : 관할 시·군·구에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확인한 양돈농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된 양돈농가는 미흡 사항 보완 시까지 적용 유예

□ 적용기간 : 2022년 한시 적용

○ (인접지역) ^{1차} 4대 방역시설 설치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 ^{2차} 그 외 시설 설치를 22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그 외 지역) ^{1차} 4대 방역시설 설치를 2022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2차} 그 외 시설 설치를 22년 4월 30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지원 절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지원 대상 농가의 인정 요건 확인 후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적용 여부 결정

이 공고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